

---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의 이해

---

2018. 7

산 림 청  
산림교육치유과

I

**근거법률**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12.1.15. 시행)

II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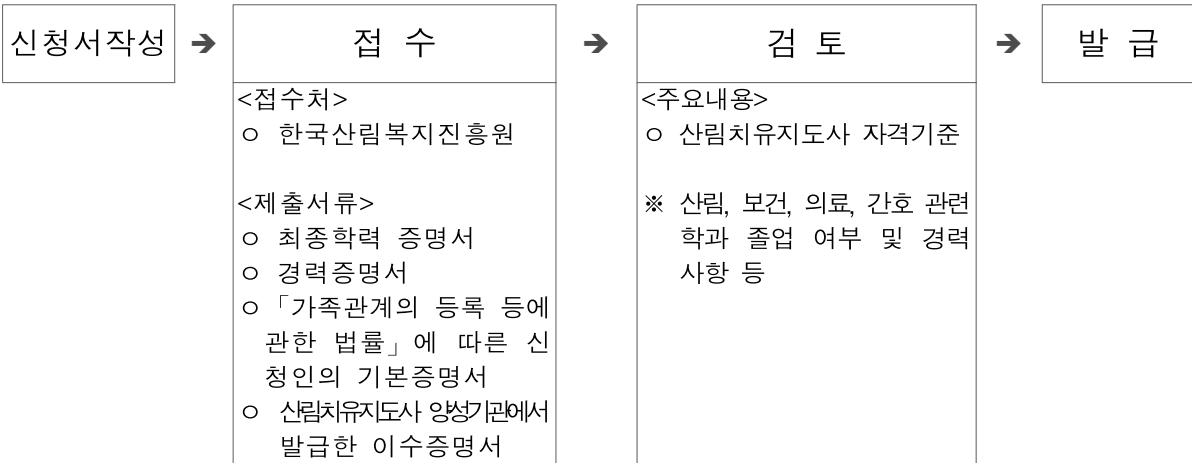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부여

대 상 자	등급별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발급기관	산림청
------	-----

담당업무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지도
------	---------------------------------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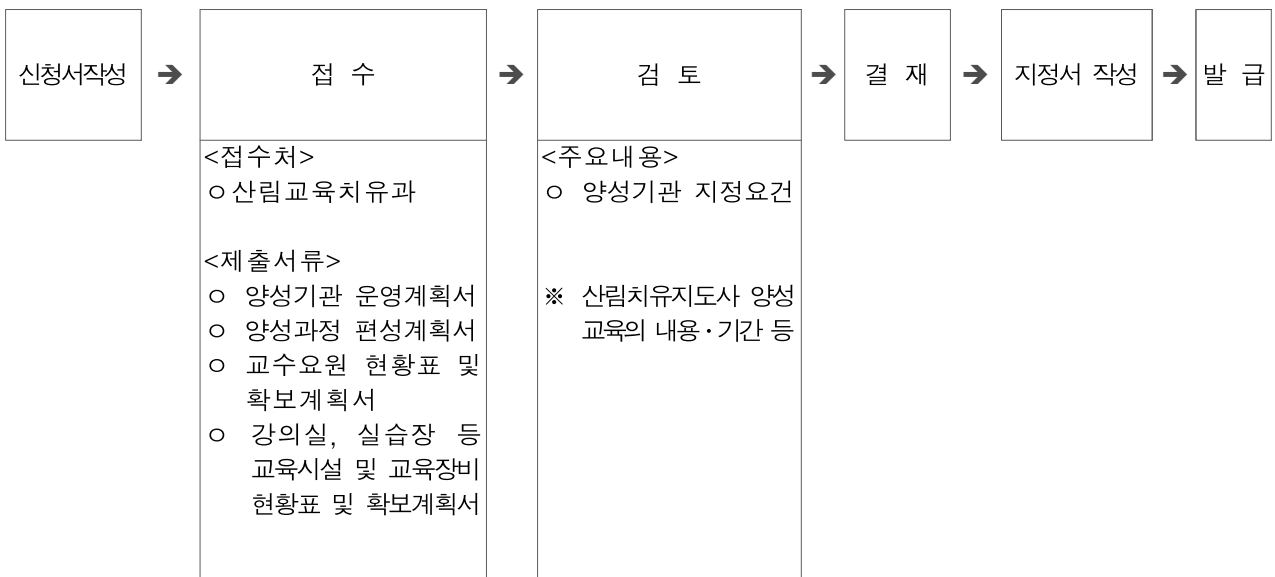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각 과정별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검증평가에 합격해야만 함

※ 검증평가는 양성과정별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합격결정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함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li> <li>○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전문교육 훈련기관’</li> <li>○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li> <li>○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li> </ul>
지정기관	○ 산림청
담당업무	○ 산림치유지도사 1급 및 2급 양성과정 운영
지정절차	



※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 : 산림치유 대상이해, 산림치유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교육 분야에 대해 1급 양성과정 130시간(18과목), 2급 양성과정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 이수

### Ⅲ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Q & A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 관련 학과의 학위 등이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 2.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3.**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8년 7월 기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22개(1급 9, 2급 13) 입니다.

연번	기관명	등급		지역	연락처
		1급	2급		
1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2급	경기 부천시	02-2164-6586
2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강원 춘천시	033-240-9490
3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전남 순천시	061-750-5076
4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광주광역시	062-958-7572
5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	광주광역시	062-530-3873
6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2급	충북 청주시	043-261-2076
7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경북 영주시	054-630-1036
8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2급	경북 경산시	053-819-1846
9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급	2급	전북 진주시	063-219-5394
1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급	2급	서울 종로구	02-880-2567
11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1급	2급	서울 성북구	02-910-4810
1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2급	대전 유성구	042-821-7834
13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경남 김해시	055-320-3484
14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급	-	강원 춘천시	033-250-8304
15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	경남 진주시	055-772-0776
1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	2급	경남 진주시	055-751-3530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세부교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입니다.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 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

**5.**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2018년 7월 현재 치유의 숲은 51개소가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li> <li>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li> <li>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ol>		
<p>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li> </ol>	<p>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종학력 증명서</li> <li>2. 경력증명서</li> <li>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li> <li>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li> </ol>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p>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p> <p>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p> <p>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p> <p>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p> <p>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p> <p>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li> <li>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li> <li>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li> <li>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li> <li>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li> </ol>	
<p>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p>	<p>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p>	<p>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p>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p> <p>2.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p> <p>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p> <p>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p> <p>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p>	<p>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 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p> <p>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p> <p>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p> <p>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p> <p>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4와 같다.</p> <p>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p> <p>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p>



[시행령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p>1급 산림치유 지도사</p>	<p>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급 산림치유 지도사</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등 급	구 분	업무범위
1급 산림치유 지도사	기획·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실행 업무</li> </ul>
2급 산림치유 지도사	관리·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li> <li>○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의 지도</li> </ul>

[시행규칙 별표 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3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시설 및 장비	<p>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p> <p>* 강의실 기준: 실당 연면적이 49.5㎡ 이상인 공간을 1실 이상 확보할 것</p> <p>나. 관리실 1실</p> <p>다. 화장실</p> <p>라.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방·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p> <p>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p>
2. 인력	<p>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p> <p>* 전임강사 기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p> <p>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p>
3. 교육과정	<p>별표 5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에 적합할 것</p>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각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해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3호, 영 제4조의5 제4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3호, 영 제4조의5 제4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행규칙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4항 관련)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분야	교육과목	계	이론	실습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계		130	78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스트레스와 건강	4	4	-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8	6	2
		예방정신의학	4	4	-
		심리요법	10	6	4
		카운슬링	4	4	-
		자기관리론	4	4	-
산림치유 자원 이해	고급산림휴양	8	4	4	
	고급수목생리	6	6	-	
	고급산림의학	6	6	-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6 4	6 4	-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수요조사	8	4	4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24	6	18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10	4	6	
기획·관리	조직 운영·관리	4	4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6	2	4	
	산림치유리더십	8	4	4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계		158	106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보건학개론	8	8	-
		환경성질환론	6	6	-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6	6	-
		생리검사와 평가	10	4	6
		인체생리	6	6	-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학개론	8	8	-
산림치유자원론		12	6	6	
치유식물응용론		8	4	4	
산림기후의 이해		8	4	4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12	4	8	
	산림스포츠의 이해	8	4	4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12	4	8	
	응급처치	12	6	6	
기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8	8	-	
	산림치유 시설 계획	8	6	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8	4	4	
선택과목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18	18	-	

\* 비교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8. 24. 예규 제367호  
개 정 2016. 1. 22. 예규 제64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3장 공고 및 지정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6조(지정신청 등)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7조(지정서류의 검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2. 신청기관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 등

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장 양성기관 운영 관리

제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규칙 제12조의3제4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변경신청)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승인시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2할 이상(시간기준)의 변동을 신고하였을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성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46호, 2016.1.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관 리 기 준
1. 출결 관리	<p>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 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p> <p>나. 일수는 총 출석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p> <p>다.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할 수 있다.</p>
2. 양성 교육	<p>가. 1일 교육시간은 주간은 6시간, 야간은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1일 주 · 야간 합산불가)</p> <p>나. 단, 4시간 이상의 실습이 포함된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1박2일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p>
3. 설문 조사	<p>가. 매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p>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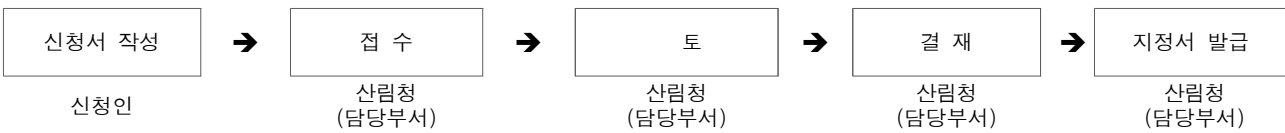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 처 리 절 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결과 보고서

양성기관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

전문분야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	-------------------------------

이수자 현 황	구 분	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50세 이하	51~60세 이하	61세 이상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귀하

양성기관의 장직인

첨부서류	1. 양성과정 일정표(기간 및 장소 포함) 2. 양성과정 수강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실 교육시간 포함) 1부.	
------	--	--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 정 2015. 5. 1. 고시 제 33 호  
 개 정 2015. 10. 16. 고시 제 82 호  
 개 정 2016. 4. 18. 고시 제 40 호  
 개 정 2017. 10. 19. 고시 제 96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제2조 관련)

###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주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주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times \frac{\text{주근무시간}}{40} = \text{인정 월수}$$

###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일근무시간 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times \frac{\text{근무시간}}{8} = \text{인정 일수}$$

다. 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frac{\text{인정 일수}}{25} = \text{인정 월수}$$

### ※ 비고

- 제1호의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제2호의 “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

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6.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4)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2)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7)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별표 3]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과 목 명
(34)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보건·의료 (27)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별표 4]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제7조제1항 관련)**

	자 격 명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농업	시설원예기술사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제7조제2항 관련)**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신청분야	관련학과 [     ], 연관과목 [     ]		
심사대상	관련학과 명칭 또는 연관과목 명칭 기입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 연관과목[     ]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 처리절차



\* 처리기관 : 산림청 관계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 정 2012. 6.15. 고시 제2012- 45호

개 정 2014. 2.11. 고시 제2014- 16호

개 정 2017. 1.19. 고시 제2017- 4호

제1조(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 별표5에서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 1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출제는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양성과정별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검토 및 출제
2. 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4호, 201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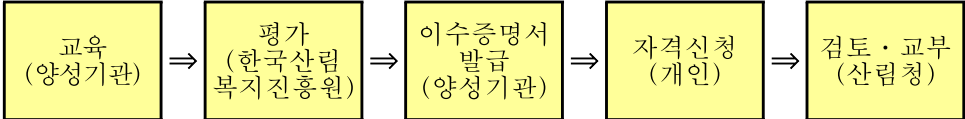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제5조 관련)

과정별	시험과목	평가방향	양성과정 교육과목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로 현대인들의 질환의 원인인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으로 예방정신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방법에 대한 습득 정도의 평가와 산림환경과 건강심리학을 연계한 산림 구성요소를 활용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자원으로서 산림의 휴양기능 이해, 수목생리학, 산림내의 약용자원의 이해, 산림경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산림과 질병의 관계 및 산림자원의 치유기전을 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산림치유 활동 운영 조직을 이해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평가·홍보 및 마케팅의 전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습득과 산림치유지도사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전과정에 대해 평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포트폴리오 작성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보건학 개념을 이해하고,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며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환경성 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을 이해하여 산림치유 대상에 적용가능한 검사방법과 측정방법을 체득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 치유적 효과를 의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산림자원을 치유를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식물의 치유적 효과 뿐 아니라 산림기후의 이해 및 산림치유에의 적용방법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산림치유 활동의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와 관련된 법규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산림치유 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활용법을 이해하고, 숲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시연과 실행을 평가함으로써 산림치유지도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연 및 실행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제도 요약]

근거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2.1.15. 시행)
담당업무	○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활동
양성과정	<p><b>1. 자격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 학과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li> <li>○ 2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li> </ul> <p>※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참고</p> <p><b>2. 양성교육</b> :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급은 130시간(18과목), 2급은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p> <p><b>3. 검증평가</b> :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 실시</p>
자격증 발급절차	 <pre>         graph LR             A[교육 (양성기관)] --&gt; B[평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B --&gt; C[이수증명서 발급 (양성기관)]             C --&gt; D[자격신청 (개인)]             D --&gt; E[검토·교부 (산림청)]             </pre>
자격증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치유 관련 경력</li> <li>○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자격증 및 관련 경력</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li> <li>○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양성과정 수료여부</li> <li>○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검증평가 통과여부</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경력 증명서, 이수증명서</li>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li> </ul>